

제 안 설 명 서

【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영 주 시

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
번 호	144

제출년월일 : 2000.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개정이유

급증하는 시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전산직 실무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총정원 : 903명 → 905명 (+2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886명 → 888명 (+2명)

※ 순증되는 보강정원 2명은 2002. 12. 31까지 시한부 정원임

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참고자료

-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 시달 공문 [경북도 행정12200-481(2000. 9. 27)] 사본 1부

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본문중 “903명”을 “905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증 “886명”을 “888명”으로 한다.

조례 제304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(1999. 9. 3) 제2조 「표 2」 중 정원의 총수 “935명”을 “937명”으로 하고, 동표제1호증 “918명”을 “92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2명 (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)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【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903명</u>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<u>905명</u>
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86명</u>	1. <u>888명</u>
2. <생 략>	2. <현행과 같음>
부칙(1999. 9. 3 조례 제304호) 제1조(시행일) <생 략> 제2조(정원에 관한 적용례) <본문생략> 「표1」 <생 략> 「표2」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표	부칙(1999. 9. 3 조례 제304호) 제1조(시행일) <생 략> 제2조(정원에 관한 적용례) <본문생략> 「표1」 <생 략> 「표2」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표
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<u>935명</u>
1. 집행기관의 정원	<u>918명</u>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17명
구 분	정 원
.....	<u>937명</u>
1.	920명
2.
제3조~제4조 <생 략>	제3조~제4조 <현행과 같음>

1623 | 1608 | 경상북도

-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-
“어우르자 세계문화 꽂피우자 한국문화”

경상북도

우 702-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-5 / 전화 950-3326 / 전송 950-2548
자치행정과, 과장 김대성 사무관 김영수, 담당자 조남월

문서번호 행정 12200-698

시행일자 2000. 9. 27

공개여부 공개

수신 시장·군수
(세부 200, 200, 200, 200)

참조 총무과장

선 령	시 작	1623		지 시
		결	부서장	
접 수	일자	2000. 9. 23 <th>전결</th> <th></th>	전결	
	시간			
	번호	5575		
처리과	총무과			
담당자	김영수			
심사자			심사일	

제 목 :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 방침 시달

1. 행정자치부 자제 12200-698(2000. 9. 23)호와 관련입니다.
2. 지방행정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미미한 실정인 바
3.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
4. 아울러 정보화인력관련 자치법규개정 추진상황 및 보강결과를 별지서식에 의거 2000. 10.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시군 정보화기능 보강방침 1부.

2. 시군 정보화인력 보강계획 1부. 끝.

경상북도지사

市・郡 情報化機能 補強方針

2000. 9.

慶 尚 北 道

市·郡情報化事業 推進機能 補強方針

I. 推進背景

-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
 - 정보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인력의 보강
- 민간의 우수전문인력 등 전문인력보강으로 정보화 촉진
 - 지역정보화사업과 연계한 인력의 전문화 동시 도모
-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ID 보급 등 정보화사업 지속 추진
 - 사업의 시급성 감안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능보강 조치 필요

< 자치단체 주요 정보화사업 개요 >

< 지방행정정보화사업 >

- 시군 행정정보화사업의 확대 추진(10개→21개 업무)
 - 1단계 10개(2000. 9월까지)
 - 2단계 11개(2002 12. 31까지)
- 그룹웨어 · 근거리통신망 · 홈페이지 · E-메일 ID 등 운영 · 관리
- 지적도면 전산화, 지역안전관리 · 토지종합정보 시스템 구축
- 지리정보시스템(GIS), 교통정보시스템(ITS) 구축 및 업무 정보화
- 공무원 정보화교육, PC · S/W 등 정보자원관리 등

< 지역정보화사업 >

-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촉진협의회 운영
- 지역문화 · 관광 · 생활정보 · 공공정보DB(문화재, 박물관 등) 구축
- 주민ID 보급 및 각종 정보화행사 주관

II. 情報化機能 補強方針

< 보강기본원칙 >

- ◇ 정보화를 이끌어갈 담당 6급 전산직이 미배치된 군의 경우 6급 전산직 확보
- ◇ 구조조정과 정원동결 등 방침감안 인력보강의 최소화
- ◇ 2단계 정보화사업 종료 등 고려 한시정원으로 운영후 존폐 검토

(1) 정원의 조정 보강

□ 정보화전담팀장 보강

- 정보화 담당인력이 많은 시보다 취약한 군에 중점
 - 6급 전산직이 없는 군의 경우 본청 6급 정원 신설
 - * 6급정원 책정기준을 초과한 군에 대해서도 정보화 조기실현을 위해 순증조치하는 것임
 - 정보화 업무와 혼합적 기능(통신·통계, 법무기능 등)을 수행하는 담당의 기능분리는 신중
 - 가급적 6급담당(계장) 밑에 전산직 6급 배치
 - * (예) 통신직이 6급담당인 경우 그 밑에 6급 전산직 배치
- 본청에 계장급 전산6급이 미배치된 시군의 경우는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 자체 조직개편을 통해 6급 전산직 보강
 - * 하위직공무원정원조정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보직이 없는 6급정원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

□ 사업추진 실무인력의 보강

- 7급이하 실무인력은 기관규모별 최소한 표준인력인 기준수요에 맞게 보강조치
 - 표준인력보다 많이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표준정원미달 또는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보강대상에서 제외함
- 순증인력이외의 자체인력보강의 경우 기능쇠퇴 등 다른 분야의 인력 상계조정 보강하여 반드시 확충
 - 본청이 아닌 산하소속기관에 배치된 전산직 정원도 필요시 정보화부서 중심으로 인력재배분 조정 검토
 - ※ 이 경우 다른 직종의 정원 상계로 발생된 초과현원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감축된 초과현원과는 구분(제외) 정보화사업 촉진 원활화 도모
-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환원조정되는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경우 이체 조정도 추진
 - ※ 인력순증 승인기준(본청 표준전산인력 부족인력 기준)
 - <2000. 6월 말 기준>

구 분	표준 전산 인력	표준정원 미달 단체	표준정원 초과 단체
시	인구50만 이상 시	10명	· 2명 증원 · 부족인력 2명이상 시 1명 증원
	인구20만 ~ 50만	7명	· 2명 증원 · 부족인력 2명이상 시 1명 증원
	인구20만 미만 시	6명	· 2명 증원 · 부족인력 2명이상 시 1명 증원
군	10만 이상	6명	· 4명이내 증원 · 부족인력 2명이내 증원
	10만 미만	5명	· 3명이내 증원 · 1명 증원
자 치 구	서 울	8명	· 부족인력 2명이상 구 1명 증원
	광역시	7명	· 부족인력 2명이상 구 1명 증원

- * 1) 표준정원초과 단체는 표준전산인력에 미달운영 단체에 한해 적용
- 2) 군의 경우 순증되는 승인정원수에는 6급도 포함됨

(2) 기타 정보화조직 · 인사운용에 관한 사항 등

□ 조직운용에 관한 사항

- 순증되는 보강정원에 대해서는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 말까지 시한부로 조치함
 - 존속기한내에 다른 행정수요 등 타분야의 정원으로 조정불가
-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정원이나 읍면동에서 조정되는 정원은 존속기한 미부여
- 승인되는 7급이하 실무인력의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책정
 - 당해 자치단체의 전산인력 배분실정을 고려 7급, 8급, 9급의 균형 책정
- 전산개발 등 외부자원활용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외부위탁

□ 전문인력의 채용강화에 관한 사항

- 정보화 추진 관련 증원되는 신규인력의 배치는
 - 6급팀장의 경우 민간의 전문인력에 대해 문호를 개방 「전문 계약직」도 채용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정보화 가속화 도모
 - 7급이하의 경우 공채 또는 우수한 일반전산직으로 충원원칙
 - 구조조정을 이유로 결원(공석)으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
-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조정되는 정원의 경우 전산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배치시 정보화 능력이 우수한 인력 배치
 - 정보화 관련 자격증소지자 등 선발 배치
- 전산 관련 전문기관교육 실시 및 정보화 수범자치단체 비교 견학 추진

III. 行政事項

- 인력이 순증되는 자치단체는 해당인력에 대해 승인신청 받은 것으로 간주함
 - 각 시군에서는 7급이하 실무인력 책정에 대해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조정할 것
- ※ 이후 정원규칙 사전 보고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기구·정원규정 제8조제2항)비율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.
- 각 시군에서는 금번 정보화인력 관련 정원조례 및 규칙 개정완료 및 결과제출 : 2000. 10월 말까지

< 서식 >

시·군별 정보화인력 정원보강 결과보고

시·군·구 명	정보화담당 기구 자체조정 보상	정보화 인력 보강 (일반직)																		기능적 (진산)		
		계				6급				7급				8급				9급				
		소계	순 증	자 체 조 정	직 렬 조 정	소계	순 증	자 체 조 정	직 렬 조 정	소계	순 증	자 체 조 정	직 렬 조 정	소계	순 증	자 체 조 정	직 렬 조 정	소계	순 증	자 체 조 정	직 렬 조 정	
○○시	○○담당 신설																					

※ 자체조정 : 정보화기구이외 부서에서 정보화기구로 조정한 정원임

시·군·구별 정보화 인력보강 계획

< 경상북도 >

자치단체명	현 본청 전산인력	승인정원 (순증계)	6급 (순증)	인력보강(안)		
				계	순증	자체조정보강
경기	증계	7	40	30	10	
포항시	8	1	-	2	1	1
창주시	5	1	-	3	1	1
김천시	8	-	-	-	-	-
안동시	7	-	-	-	-	-
구미시	5	2	-	2	2	-
영주시	4	2	-	2	2	-
영천시	6	-	-	-	-	-
상주시	6	-	-	-	-	-
운경시	2	1	-	4	1	3
성산시	5	2	-	2	2	-
군위군	3	2	1	1	1	-
의성군	4	1	-	1	1	-
청송군	4	1	-	1	1	-
영양군	2	3	1	2	2	-
영덕군	4	1	-	1	1	-
청도군	2	3	-	3	3	-
고령군	2	3	1	2	2	-
성주군	3	2	-	2	2	-
칠곡군	3	2	-	3	2	1
예천군	1	1	1	3	-	3
봉화군	2	3	1	2	2	-
울진군	2	3	1	2	2	-
울릉군	1	3	1	3	2	1

※ 순증정원의 존속기한은 2002. 12. 31까지입니다.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144호
- 의 안 명 :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- 해당부서 : 행정지원국 총무과

2. 제안이유

급증하는 시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전산적 실무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총정원 : 903명 → 905명 (+2명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886명 → 888명 (+2명)
- ※ 순증되는 보강정원 2명은 2002. 12. 31까지 시한부 정원임.

4. 검토의견

-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의 주요내용은
 - 제2조(정원의 총수) 본문중 총정원 “903명”을 “905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“886명”을 “888명”으로 하며
 - 조례 제304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(1999. 9. 3) 제2조 「표2」 중 정원의 총수 “935명”을 “937명”으로 하고, 동표제1호 중 “918명”을 “920명”으로 증원하는 내용임.
- ※ 순증되는 보강정원 2명은 2002. 12.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원임.

○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지방행정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산직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0. 11. 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